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 지원요청은 어디에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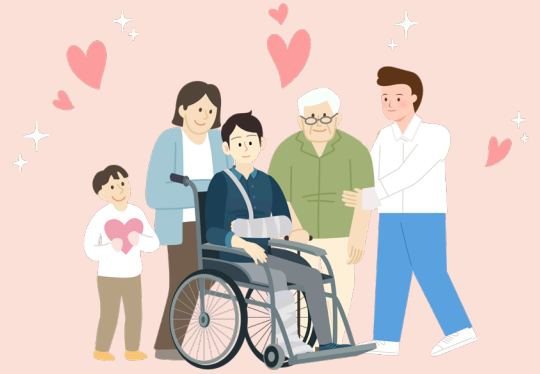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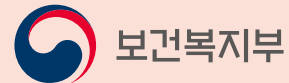
##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우리 함께**  
**이겨내요!**



365일 24시간 긴급복지지원 상담·연계해 드립니다

# 01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

## 소득·재산 기준(2024년)

소득	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29만원 이하
재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241(310) 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 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165) 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인가구 823만원, 4인가구 1,173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추가)

###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소득 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0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2024년)

지원종류	지원내용			
	(원/월)			
주 지 원	생계지원 (가구단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713,100	1,178,400	1,508,600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833,500	2,142,600	2,437,800
주 지 원	의료지원 (개인단위)	지원결정 3,000,000원 이내 의료서비스 (1회) ※퇴원 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지원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 식대 등		
		주거지원 (가구단위)	대도시 662,500원 이내 (월, 4인 기준)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월, 4인 기준) 농어촌 250,500원 이내 (월, 4인 기준)	
부 가 지 원	교육지원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 분기		
		그 밖의 지원	연료비 150,000원 (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700,000원 (인) 장제비 80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 생계급여로 연계